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79호로 2022년 6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의무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2조의 2)
-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2조의 3)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2조의 2**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함. 또한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중도 사퇴·품위손상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함.

- **안 제72조의 3**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비밀 유지 등의 사항을 신설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그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들을 신설,

정비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개정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80호로 2022년 6월 8일 이규선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제2장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8조)
- 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대상자(제2조),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신청절차(제4조), 심사대상(제5조), 심사기준(제6조), 지급절차(제7조), 수령권 승계(제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대상자(제9조), 근속연수의 계산(제10조), 지급계획 수립·시행(제11조), 지급 신청(제12조), 심사대상(제13조), 심사기준(제14조), 지급 절차(제15조) 등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취지에 부합하며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향후 본 규칙의 시행 과정에서 예산 편성권 등 재정 관련 권한이 여전히 집행기관에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 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 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 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0. 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11. 30.>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81호로 2022년 6월 8일 최봉희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그 밖에 의회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다. 공무국외출장자의 교육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라. 공무국외출장 허가권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영등포 구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은 의장에게 있으며 심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 제9조는 출장자의 소양교육과 보고의무 등 출장자의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제11조는 귀국 후 보고서 제출과 허가권 위임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 제13조는 출장 사후자료 등의 관리 및 경비 환수 관련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소속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의 하나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2년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등을 준용하여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과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82호로 2022년 6월 8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 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규칙을 새로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직무대리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된 바,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 사무국장, 팀장의 직무대리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가 어려운 경우 의장이 지정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하는 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공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과 「직무대리규정」에서 소속기관이 직무대리에 관한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2022년도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에 맞추어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2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본부장·단장·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할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할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위임규정)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